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5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9171호

시행일자 2026. 11. 1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(2026.11.13.)

2. 상기와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는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동일 치료의 중복·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·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35호, 2025. 12. 23. 공포, 2026. 12. 24. 시행)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요양급여와 그 적용 기준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과거 요양급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,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,

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·보고 의무 대상에서 누락됐던 약제를 일괄하여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**시행일 : 2026. 12. 24.**

- 제1조, 제13조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: 2026. 11. 13.

*붙임 :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